

- 자율방범대 보상금 분야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2017년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자율방범대 보상금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 ▶ 자율방범대 보상금 정산,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관리에 대하여 총 16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3건, 주의 13건), 재정상 조치 95,880원(회수 95,88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18년 감사 종합계획 [감사실-8032 (2017. 12. 28.)]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기간 : 2018. 12. 10. ~ 2018. 12. 14.(5일간)
- 감 사 장 : 상설감사장
- 감사대상 : 옥련1동 등 13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감사분야 : 자율방범대 보상금 운영 및 관리(2018년 1월 ~ 9월)

3 중점감사 사항

분야	감사사항
자율방범대 보상금분야	○ 자율방범대 보상금 지급 - 자율방범대 소모성 운영비 지출 -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출 ○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관리 -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 자율방범대 활동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

II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1 일반현황

(기준일 : 2018. 9.30.)

기관명	면 적 (km ²)	세대수	인 구(명)			행정조직		행정인력 (정원/현원)
			계	남	여	통	반	
계	50.78	126,785	340,251	169,299	170,952	508	2,657	159/161
옥련1동	2.15	8,251	21,385	10,672	10,713	32	152	12/12
옥련2동	1.93	8,109	22,652	11,230	11,422	28	169	12/12
선학동	2.41	8,154	18,723	9,558	9,165	36	176	13/13
연수1동	1.52	10,589	22,586	12,209	10,377	49	254	13/13
연수2동	1.0	9,837	23,051	11,306	11,745	35	211	13/13
연수3동	1.0	7,665	18,208	8,698	9,510	33	165	13/13
청학동	2.39	12,625	27,617	14,225	13,392	47	259	13/13
동춘1동	3.30	6,065	18,150	8,937	9,213	33	141	10/11
동춘2동	1.72	6,946	20,179	9,932	10,247	30	131	10/10
동춘3동	0.7	5,833	19,638	9,562	10,076	28	113	10/10
송도1동	9.7	10,796	34,657	17,044	17,613	39	194	11/10
송도2동	12.22	17,765	54,436	26,696	27,740	66	378	17/17
송도3동	10.74	14,150	38,969	19,230	19,739	52	314	12/13

2 자율방범대 현황

(기준일 : 2018. 9.30.)

기관명	단 체 명	대표자	인원(명)	비고
옥련1동	옥련1동 자율방범대	김영채	25	2018.9.11.해산
옥련2동	옥련2동 자율방범대	김민경	17	
선학동	선학동 자율방범대	이유현	35	
연수1동	연수1동 자율방범대	황순자	14	
연수2동	연수2동 자율방범대 / 부녀방범대	방경섭 / 최순임	23 / 15	
연수3동	연수3동 자율방범대	김예순	23	
청학동	청학동 자율방범대	이상철	23	
동춘1동	동춘1동 자율방범대	김홍식	18	
동춘2동	동춘2동 자율방범대	전명옥	20	
동춘3동	동춘3동 자율방범대	민경무	12	
송도1동	송도1동 자율방범대	이해진	38	
송도2동	송도2동 자율방범대	곽 유	23	
송도3동	송도3동 자율방범대	이무일	18	

III

감사 결과

1 총 평

- ▶ 우리구 13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2018년 4분기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자율방범대 보상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

- ▶ 감사결과 이전 종합감사 시 지적되었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대한 『동 자율방범대 활동 및 예산운용 기준(총무과)』을 수립하였고, 결재 전용카드를 개설하는 등 자율방범대 보상금 운영에 대한 많은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졌음.
- ▶ 다만, 『동 자율방범대 활동 및 예산운용 기준』에 따른 각 동 주민 센터(행정복지센터)의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미실시가 다수 있었고,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규정상 야식비 기준 이외에 급량비 기준 단가를 추가로 안내하여 집행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됨.
- ▶ 2018년 4분기 자율방범대 보상금분야 특정감사 실시결과 자율방범대 보상금 정산, 자율방범대 방법활동 관리에 대하여 총 16건의 부적정 (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3건, 주의 13건), 재정상 조치 95,880원(회수 95,88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2 지적사항 총괄

□ 처분 현황별

구 분	처 현 황	행 정 상 조 치 (건)		재 정 상 조 치 (원)		신 분 상 조 치 (건)	비 고
		시정	주의	환수.환급.추징			
계	16	3	13	총계 회수	95,880원 95,880원	-	
옥 련 2 동	1	-	1		-	-	
선 학 동	1	-	1		-	-	
연 수 1 동	1	-	1		-	-	
연 수 2 동	1	-	1		-	-	

구 분	처 분 현 황	행 정 상 조 치 (건)		재 정 상 조 치 (원)		신 분 상 조 치 (건)	비 고
		시정	주의	환수.환급.추징			
연 수 3 동	1	-	1	-		-	
청 학 동	2	1	1	회수	83,880원	-	
동 춘 1 동	1	-	1	-		-	
동 춘 2 동	1	-	1	-		-	
동 춘 3 동	3	1	2	회수	5,000원	-	
송 도 1 동	1	-	1	-		-	
송 도 3 동	2	1	1	회수	7,000원	-	
총 무 과	1	-	1	-			

□ 업무 분야별

구 분	계	자율방법대 보상금 정산	자율방법대 방법활동 관리	비 고
계	16	3	13	
옥 련 2 동	1	-	1	
선 학 동	1	-	1	
연 수 1 동	1	-	1	
연 수 2 동	1	-	1	
연 수 3 동	1	-	1	
청 학 동	2	1	1	
동 춘 1 동	1	-	1	
동 춘 2 동	1	-	1	
동 춘 3 동	3	1	2	
송 도 1 동	1	-	1	
송 도 3 동	2	1	1	
총 무 과	1	-	1	

3 동별 처분요구 목록

연번	동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16건(시정 3건, 주의 13건) / 재정상 95,880원 (회수 95,880원)			-	
1	○○○○○ (1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활동사진 미첨부(9회) 차량주유시 개인포인트 적립(4회)	주의	-	-	
2	◇◇◇◇ (1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주의	-	-	
3	■ ■ ■ ■ (1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근무일지 일일확인 미 실시(96건)	주의	-	-	
4	●●●●● (1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주의	-	-	
5	①①①①① (1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2회)	주의	-	-	
6	★ ★ ★ (2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근무일지 일일확인 미 실시(70건)	주의	-	-	
7		자율방범대 보상금 정산에 관한 사항 ☛ 간식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집행	시정	회수 83,880원		
8	❖❖❖❖ (1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주의	-	-	
9	☆☆☆☆ (1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주의	-	-	
10	△ △ △ △ (3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주의	-	-	
11		자율방범대 보상금 정산에 관한 사항 ☛ 간식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집행	시정	회수 5,000원		
12		자율방범대 보상금 정산에 관한 사항 ☛ 매월별 간식비 일괄 결제	주의			
13	◆◆◆◆ (1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주의	-	-	
14	○○○○○ (2건)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 분기별 활동사항 현장점검 미 실시(3회) 활동사진 미첨부(9회) 근무일지 일일확인 미 실시(62건)	주의	-	-	
15		자율방범대 보상금 정산에 관한 사항 ☛ 간식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집행	시정	회수 7,000원		
16	***	자율방범대 예산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 야식비 집행기준 안내 부적정	주의	-	-	

IV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자율방범대 방법활동 관리

1. 자율방범대 활동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 ◇◇◇, ■■■■, ●●●●, ①①①①, ☆☆☆, ❖❖❖❖,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 및 감독)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 자율방범대 활동 및 예산운용 기준[***-19068(2017.08.23.)호] IV-(4) 활동 점검 및 정산에 의거 당일 방법순찰활동에 따른 근무일지 작성 후, 관할 지구대의 확인서명 날인, 분기별 1회 이상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활동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근무일지 작성 시 활동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나, ■■■■, ☆☆☆, ○○○○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하여 방법순찰활동 당일 근무일지 확인서명을 누락하였고 / ○○○○, ◇◇◇, ■■■■, ●●●●, ①①①①, ☆☆☆, ❖❖❖❖, ☆☆☆☆, △△△△, ◆◆◆◆, ○○○○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제 근무 여부, 근무행태 등의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 ○○○○, ○○○○에서는 월1회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사진을 제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 실비 지출시 개인포인트에 적립하는 등 자율방범대 점검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자율방범대 보상금 지급

1. 자율방범대 보상금 정산에 관한 사항 【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재정상

☆☆☆ 회수 83,880원 / △△△△ 회수 5,000원 / ○○○○ 회수 7,000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와 야식비(매식단가의 1/2 이내로 적용) 등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산 지원 등)에 의하면 구청장은 방법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2. 방법대 활용에 대한 야식비, 실소요 출동비)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준용)에는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동 자율방법대 활동 및 예산운용 기준(※※※-19068(2017.08.23.)) 및 2018. 1분기 동(洞) 자율방법대 실비 정산 결과 제출(※※※-4799(2018.03.05.))에 따르면 자율방법대 예산운용 기준의 실비지원은 아래와 같다.

실	전용카드	단체명으로 된 통장(또는 개인채주명과 '자율방법' 명칭 사용) 개설 및 체크카드 발행	2018. 1. 1.부터
비	간 식 비	순찰대원 대상 야식비(주류 제외), 간식류 / (단가) 1인 당 4,000원	-
지	순찰용품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피복 등 방법순찰 관련 품목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참조
원	차량유류대	순찰용 차량의 유류대 / (단가) 휘발유:1,501원/ℓ, 경유:1,292원/ℓ	-

- 그러나, ★★, △△△△, ○○○○ 자율방법대는 간식비 및 비품비를 집행 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동(洞) 자율방법대 활동 및 예산운용 기준(연수구)에 따른 간식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고, △△△△ 자율방법대는 매월별 간식비를 일괄 결재한 사실이 있다.

2. 자율방법대 예산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방법대 순찰대에 대한 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2 이내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산 지원 등)에 의하면 구청장은 방법대의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방법대 활동에

대한 야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동 자율방범대 활동 및 예산운용 기준[▲▲▲-19068(2017.08.23.)호] ” 을 마련하여 야식비 기준(2017년 : 3,500원 / 2018년 : 4,000원)을 각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통보하였다.
- 그러나 2018년 1분기 실비정산 결과를 각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통보하면서 [▲▲▲-9479(2018.04.25.)호], 야식비 기준 이외에 급량비 기준단가 8,000원을 추가로 안내함으로써 각 동의 자율방범대 예산운용에 있어서 야식비를 기준과 다르게 집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